

2009. 04. 16(목) 10:00

제158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03. 31.

나. 제 출 자 : 이창도 의원 외 1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04. 10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11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정이유

- 군내 거주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보상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(안 3조)
 -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활동 종사자
-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 - 가을철 발열성 질환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등
 -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법규에 정함

- 보상금의 청구·지급 및 지원 제외에 관하여 규정함
(안 제5조부터 제6조)
- 보상금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먼저 관련상위법을 살펴보면,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부는 농림작업으로 인하여 부상·질병·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·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제정으로 판단되고,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 검토내용은,

- 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2조(정의)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임.
- 안 제3조에서 지원요건을 정하면서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농업의 생산 활동 중 가을철

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- 안 제5조는 보상금의 청구·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며, 안 제6조는 보상금지급 제외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